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80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김의겸 · 윤준병 · 문진석
안호영 · 송재봉 · 김병주
송영길 · 김성희 · 朴芝源
황정아 · 백승아 · 조인철
김남국 · 오세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 및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확대되고 아이디어 · 데이터 · 인적 식별표지 등 보호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규정만으로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기준이 다른 손해액 산정기준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정합성 저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의 산정대상에 아이디어 · 데이터 · 인

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며,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침해행위”를 “침해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로,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을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를”로, “양도하였을”을 “양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였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수량”을 “양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 수량”으로, “사유로 판매할”을 각각 “사유로 판매하거나 제공할”로, “있었던 물건의”를 각각 “있었던 물건 또는 제공할 수 있었던 서비스의”로, “판매한 물건의”를 “판매한 물건 또는 제공한 서비스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양도수량”을 “양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 수량”으로, “있었던 물건의”를 “있었던 물건 또는 제공할 수 있었던 서비스의”로, “판매한 물건의”를 “판매한 물건 또는 제공한 서비스의”로, “없었던”을 “없었거나 제공할 수 없었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를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

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를 “부정경쟁 행위등침해행위로”로,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로, “통상”을 “합리적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를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를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에”로 한다.

1.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
3.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4. 제2조제1호카목에 따른 행위의 대상이 된 데이터
5. 제2조제1호타목에 따른 행위의 대상이 된 타인의 성명·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
6. 제2조제1호과목의 행위의 대상이 된 성과 등

제14조의3 본문 중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를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로”로 한

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를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 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u>침해행위</u> 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 익을 침해한 자가 그 <u>부정경쟁 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 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 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 다)</u> 를 하게 한 물건을 <u>양도하 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 액으로 할 수 있다.</u>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 ----- <u>침해행위(이하 “부 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 다)</u> ----- ----- ----- ----- <u>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를-----양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였을</u> ----- ----- ----- ----- --.
1. 그 물건의 <u>양도수량</u> (영업상 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u>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 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 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u>	1. ----- <u>양도 또는 서비스 의 제공 수량</u> ----- ----- ----- <u>사유로 판매하거나 제공할</u> ----- ----- -----

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

사유로 판매하거나 제공할----

-----있었던 물건 또는 제공할 수 있었던 서비스의-----판매한 물건 또는 제공한 서비스의----

----있었던 물건 또는 제공할 수 있었던 서비스의-----

2. -----양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 수량-----

--있었던 물건 또는 제공할 수 있었던 서비스의-----

-----판매한 물건 또는 제공한 서비스의-----

-----없었거나 제공할 수 없었던-----

액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②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로-----

-----.

③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합리적으로

-----.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
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
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부정경쟁 행위, 제3조의2제1
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
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

1. 부정경쟁 행위 또는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
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
용된 상표 등 표지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

3.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의 대
상이 된 기술적 또는 영업상
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4. 제2조제1호카목에 따른 행위
의 대상이 된 데이터

5. 제2조제1호타목에 따른 행위
의 대상이 된 타인의 성명·
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

6. 제2조제1호파목의 행위의 대
상이 된 성과 등

④ 부정경쟁 행위등침해행위로-

-----.

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⑤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에-----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illegible]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